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4. 12 31(수) 평창군수(상하수도사업소)

나. 회부일자 : 2015. 01. 13(화)

다. 상정일자 : 2015. 01. 19(월) 제20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가.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지정기일 내에 급수 공사비를 선납 하여야 하며 지정기일 내에 미납시 신청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로 인한 미납사유 제출시 10일에 한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나.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수도 사용료 업종 구분표에 따라 현재 영업용(업무용)으로 부과되는 농공단지내 입주업체에 대하여 금회 신설되는 산업용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요금제를 누진단가가 아닌 톤당 정액단가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금숙)

- 본 조례안은 신규급수공사 신청시 급수공사비를 지정기일내 미납시 납부기한 연장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업무용 또는 영업용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업종, 톤당 단가를 변경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의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요금체계 변경을 통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 우리군의 상수도 요금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 우리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3년말 현재 83%에 이르고 있으며, m³당 생산원가는 3,900원인 반면, m³당 평균 수도요금은 1,203원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0.8%에 그치고 있어 요금현실화에 대한 상위부처의 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보고 결과 또한, 2011년 23억, 2012년 26억, 2013년 34억 등 당기 순손실의 지속적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음.
- 조례의 개정시 이에따른 상수도 요금 순감소로 당기순손실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대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 또한, 우리군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체는 총 94개소로 금번 조례의 개정시 실질적인

수혜의 대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에 의하여 등록된 27개의 농공단지 입주업체로서,

- 수혜의 대상 또한 특정인 또는 특정 사업체로 한정 할 수 없으므로 요금 순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체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별표 3] 업종 구분표의 구분내용을 “농공단지내 입주업체“에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체“로 수정하여 수혜의 대상을 확대 하는 것 또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납부기한 내 미납사유를 제출 시에는 10일에 한하여 납부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별표 1,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23조 수도사용료 요율표

업종 \ 요율	사용량 (톤)	사용요금(원)	비고
가정용	0~10	420	
	11~20	760	
	21~30	950	
	31~40	1,120	
	41~50	1,160	
	51이상	1,750	
업무용	0~20	1,070	
	21~50	1,530	
	51~100	1,910	
	101~300	2,200	
	301이상	2,350	
영업용	0~30	1,090	
	31~50	1,610	
	51~100	1,990	
	101이상	2,560	
육탕용	0~200	1,620	
	201~300	2,120	
	301~500	2,510	
	501이상	3,390	
산업용		1,285	

[별표 3]

업종 구분표

업종별	구분 내용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 연탄, 양곡, 지물, 철물, 문방구 등의 소매점,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인장업, 행정사서업, 수예업,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 ○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 원호단체 등
업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소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 사설소화전 ○ 관공서, 학교, 병원, 빈점포, 새마을금고(신협포함), 농협,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 ○ 국가 또는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 조용수 제외) ○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사회단체(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 여 등록된 공익단체)
영업용	<p>1. 식품접객업 2.공연장 3.숙박업(여인숙제외) 4.유기장, 노래방 5.백화 점, 도매 센타, 대규모매점 6.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또는 관광업 7.예식장 8.사설학원 9.사진현상소 10.양조업 11.의약품.화공약품, 화장품제조 업 12.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제외) 13.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일시 개 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입주전까지, 운반 급수의 경우는 최종단계, 요율적용) 14.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급수 15.수도관 파손에 의 한 누수 16.정육점 17.법령(의료업,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기준 내의 안마시술소 18.주점, 슈퍼마켓, 닭집, 제과점 19.금융업(보험, 신용금고, 증권사 포함) 20.전자제품판매(귀금속판매 포함) 21.도축장, 두부공장, 콩나 물공장, 22.한의원, 침술원, 가축병원 23.창고업, 제재소, 화원(꽃집) 24.단란 주점, 골프장 25.병원(의원포함) 26.이.미용업 27. 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 패 인트류제조, 블록시멘트제조업) 28. 제빙업, 도축장, 염색업, 도금업</p>
욕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목욕장업 ○ 특수목욕장업 ○ 법령에 규정된 시설기준(연면적 803m²이하,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m²이하)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